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8. 17 선고 2021가단1913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지배인 김진수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6. 29.
판 결 선 고 2021. 8.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8. 2. 2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에게 2013. 4. 23. 원금 10,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는데, C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C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231551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7. 26.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위 지급명령에 따르면 C은 원고에게 8,217,035원 및 그 중 6,914,352원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은 망 D의 소유이고, D은 2018. 2. 26. 사망하였는데 원고와 C은 망 D의 공동상속인이다. 피고는 2020. 7.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2. 2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접수 제169929호로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 D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2003. 11.경 서민주택구입자금대출에 의한 70,000,000원의 대출을 받았는데 이후 D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대신 피고가 2009. 9.경부터 위 대출금의 만기 상환일인 2018. 11.까지 매달 약 670,000원의 원리금을 상환하였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때 D의 생전 연대보증으로 인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압류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는 2020. 9.경 51,024,539원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상환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 사해행위의 성부

원고는, 2018. 2. 26.자 협의분할은 C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 발생한 대여금 및 망 D의 연대보증에 의한 압류 등을 피고의 출연으로 직접 이를 해결하였고 이러한 피고의 기여분 등을 감안하여 C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사해행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C의 무자력을 입증해야 하는바, 갑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사 C의 무자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는 망 D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출금을 2009. 9.경부터 2018. 11.경까지 무려 10년에 걸쳐 원리금을

상환하였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 이전시 압류를 해결하기 위하여 D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원리금 51,024,539원을 변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인 C은 실질적으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기여분 등을 고려하면 C의 구체적 상속분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 피고의 기여분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인정한 공동상속인들의 협의가 상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C이 자신의 상속권리를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로서는 C에게 구체적 상속분이 없다고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고를 비롯한 C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홍준

별 지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 빌라 [] 동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상라브지붕 5층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59.85㎡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대 218㎡

대지권 종류 : 1. 소유권

대지권 비율 : 218분의 22.06.꺠.

